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령·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보를 명시(안 제8조의2)
- 나.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
2.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정보
3.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및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5.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정보
6.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정보
7. 「항공안전법」 제166조 및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8.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9.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되, 종전의 같은 조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조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3. 법 제9조의2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부 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 제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u> <u>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에 관한 정보</u> <u>2.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정보</u> <u>3.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및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에 관한 정보</u> <u>4. 「항공안전법」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u> <u>5. 「항공안전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에 관한 정보</u>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1. ~ 2. (생략) <신설> 3. ~ 9. (생략)	6.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정보 7. 「항공안전법」 제166조 및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 8. 「항공안전법」 제125조제5항 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9. 「항공사업법」 제40조제1항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행 정처분에 관한 정보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 음)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의2에 따른 드론 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4. ~ 10. (현행 제3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연 락 처	(044) 201 - 4315